#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9387 제안연월일: 2025.3..

제 안 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경 과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195호)	조승환의원	2024.8.26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7차 전체회의 (2024.11.12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회부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5330호)	정부 제출	2024.11.7.	제419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4.12.13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
- 가.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2. 26.) 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- 나. 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 3. 6.)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·사용자 를 알 수 없는 불법·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「행정대집행법」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,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·비치·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 는 것임.

#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소유자·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·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(안 제65조의2).
- 나.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(안 제71조).
- 다.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·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,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(안 제76조의2).
- 라. 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(안 제101조).

법률 제 호

##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5조의2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 ① 행정관청은 어구·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어구·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.

- 1.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·시설물을 철거하는 경 우
- 2.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, 조업 금지기간·구역을 위반한 어구·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
- 3.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·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어구·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

야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·시설물의 보관, 처리,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5조의3(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) ① 행정관청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 자원의 번식·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  -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 하거나 매각·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"를 "제1항 및 제2항에서"로 한다.

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6조의2(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) 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"어구관리기록부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 - 1. 입·출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
  - 2.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
  - 3. 어구를 폐기한 장소. 종류 및 수량

- 4.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(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)의 종류 및 수량
- 5.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·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6조의3(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·점검) ①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 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 부를 적정하게 작성·비치·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 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101조의 제목 "(권한의 위임과 위탁)"을 "(권한・업무의 위임·위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"를 "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"로, "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,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서장에게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권한의"를 "업무의"로, "장에게"

를 "장이나 관련 전문기관 • 단체에"로 한다.

제112조제4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·비치·보 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

8의3.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다만, 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,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65조의2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 ① 행정관청은 어구·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·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할수 있다. 1.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아나한 어구·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.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, 조업 금지기간·구역을위반한 어구·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.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위반한 어구·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

<신 설>

제71조(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 업의 신고) ① · ② (생 략) 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 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 거한 어구·시설물의 보관, 처 리,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5조의3(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) ① 행정관청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·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기 어려 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매각・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71조(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 업의 신고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<삭 제> 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 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 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3 <삭 제>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 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 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 리한 것으로 본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(이하 "어구생산 업등"이라 한다)의 신고, 변경 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 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⑤ 제1항 및 제2항에서
•

제76조의2(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) ① 어구의

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 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"어구관리기록부"라한다)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.

- 1. 입·출항 당시 어선에 적재 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
- 2.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어구의 종류 및 수량
- 3. 어구를 폐기한 장소, 종류 및 수량
- 4.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

   (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 구를 포함한다)의 종류 및 수량
- 5.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 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

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 부의 작성 내용・방법 및 제2 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 와 신고 내용・방법・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.

제76조의3(어구관리기록부의 확 인・점검) ①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・비치・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 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 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.

제101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 제101조(권한・업무의 위임・위 탁) ① -----

<u>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,</u> 시·도지사는 <u>시장·군수·구</u> <u>청장에게</u> 각각 위임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「어촌・어항법」 제57조에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<u>장에</u>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12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<sup>7</sup> 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8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
해양경찰청장에게
<u>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, 해</u>
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
<u>게</u>
②
<u>업무의</u>
<u>장이나</u>
<u>관련 전문기관·단체에</u>
<u>.</u>
제112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
과 같음)
<b>4</b>
<u>.</u>
1. ~ 8. (현행과 같음)
8의2.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
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・
비치・보존하지 아니하거나
거짓으로 작성한 자
<u>8의3.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</u>

9. ~ 11. (생략)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·징수한다. <단서

여	유실	어구	신고	1를	하지	) 아
<u>니</u>	<u>한 자</u>					
9. ~	11.	(현	행과 🌣	같음	)	
5 -						
				<u>다</u> 면	<u> </u>	<u> 14항</u>
제8호	호의2	및	제8호	트의3	에	<u> 따른</u>
과태	료는	행정	성관청	또	느	해양

경찰청장이 부과 · 징수한다.